

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편성 현황

□ 근거조항

-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
-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

(단위 : 천원, %)

세입액* (A)	예산편성			비율 (C=B/A)	비고
	영역	산출내역	계(B)		
79,639,102	교육활동	6,800,000원*1,601명*68.76%≒	18,714,277	23.5	
	연구활동	4,250,000원*1,601명*68.76%≒			
	학생지도	5,950,000원*1,601명*68.76%≒			

* 세입액(법 제11조제3항제1호) :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교육과정, 공개강좌, 산업체 위탁교육, 전공 심화과정,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,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

※ 2015년 세입액은 '그 밖의 납입금'에 해당됨. 국고 일반회계 입학금 및 수업료는 추후 교육부 방침에 의거 세입예정